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 1716

2014. 2. 26. 재정경제위원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2월 10일, 박운기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17일

다. 상정결과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】

-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(2014.2.26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박운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경기침체의 지속, 고용없는 성장, 실업 증가 등으로 비정규직 근 로자가 양산되고, 이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, 차별적 대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. 이에 단시간·파견·기간제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사·연구 및 발굴하고, 자치구 노동복 지센터에 대한 통일적 업무추진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개설·운영 되는 '서울노동권익센터'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'서울노동권익 센터'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 및 별표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남중)

가. 개정안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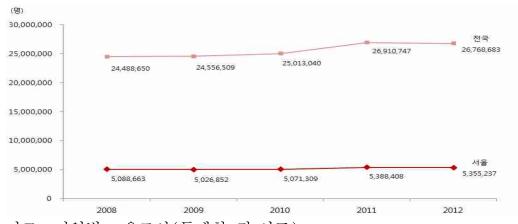
 개정안은 단시간·파견·기간제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사·연구 및 발굴하고,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통일적 업무추진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'서울노동권익센터'설치·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(안 제3조 및 별표)

 최근 우리 경제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면서 국가 생산성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.

- 특히, 지식·정보산업 중심의 탈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학력·비숙련 노동자들의 신분과 지위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.
- 서울지역의 노동시장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면서 2008년 이후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서울지역 취 업자 수는 정체되어 있고,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상용근로자 규모는 50% 수준에 머물고 있음.

〈그림 1〉 서울지역 노동인구 규모 동향



자료: 지역별 고용조사(통계청, 각 연도)

〈그림 2〉 2012년 서울지역 노동인구 종사자 지위 비중



자료: 지역별 고용조사(통계청, 각 연도)

-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불안, 열악한 근로 조건, 차별적 대우 등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에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연구노력 등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.
- 이에 개정안은 '서울노동권익센터'(이하 "센터")를 설립해 취약근 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와 현재 자 치구에서 운영 중인 노동복지센터¹)와의 업무 협력관계 강화를 도 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기존의 근로자 복지시설이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, 새로 설치하는 센 터는 취약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사업에 집중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음(참고자료).
- 따라서, 개정안은 취약근로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조건, 차별적 대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이미 서울시에는 2개소의 근로자 복지관과 4개 자치구에 노동 복지센터가 설치되어 각종 근로자 교육 및 상담 등의 복지 사업이 진 행되는 있는 사정과 특히 이들 센터가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제 각기 운영되면서 사업 중복이나 운영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¹⁾ 현재 서울시는성동, 서대문, 구로, 노원 등 4개 자치구의 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2014년에 약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명칭ㆍ위치 및 기능은"을 "명칭 및 기능은"으로 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]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(제3조 관련)

명 칭	기 능	
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	근로자 복지증진	
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	근로자 복지증진	
서울노동권익센터	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u>신·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		개 정 안	
	운영) 이 <i>조</i> 례 복지시설의 <u>명경</u> } 같다.	–	제3조(설치·운영) 이 조례에 따라 설 치·운영하는 복지시설의 <u>명칭 및 기능은</u> 별표와 같다.	
[별표] <u>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 명칭·</u> 위치 및 기능(제3조 관련)		[별표] <u>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 명칭</u> <u>및 기능</u> (제3조 관련)		
명칭	<u>위치</u>	기능	명칭	기능
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	영등포구 우정길 10(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<u>57)</u>	근로자 복지증진	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	근로자 복지증진
서울특별시강 북근로자복지관	<u>은평구 통일로</u> <u>684(은평구</u> <u>녹번동 5번지)</u>	근로자 복지증진	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	근로자 복지증진
<u>〈신 설〉</u>			<u>서울노동권익센터</u>	<u>근로자</u> <u>복지증진 및</u> <u>권익보호</u>